

『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09년 7월 8일

인천광역시의회 의장

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시립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예술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자 및 기량이 뛰어난 예술인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예술성을 시민에게 제공하며
- 수준 높은 예술적 기량을 연마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시립예술단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함.

2. 주요내용

- 시립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을 만 57세 이하로 함(안 제9조제1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및 개인은 2009년 7월 27일까지(20일간)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전화: 032-440-6224, 팩스: 032-440-876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: ○ 성 명: ○ 연락처:			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중 “만 55세”를 “만 57세”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위촉연령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중인 자의 위촉연령을 상향함에 있어서, 2008년이 위촉한도 연령인 경우는 1년의 범위 안에서, 2009년이 위촉한도 연령인 경우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각각 이를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9조(위촉연령) ①단원의 위촉연령 은 <u>만 55세</u> 이하로 하되, 소년·소녀 합창단 단원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로 한다. ② (생략)		제9조(위촉연령) ① ----- ----- <u>만 57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		② (현행과 같음)